

議案番號	第 290 號
議決年月日	1995. 7. 31. (第 35 回)

議決事項	원안 가결
------	----------



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(안)

提出者	固城郡守
提出年月日	1995. 7. 15.

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(안)

의안 번호	29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7. 15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(안)이 제정됨에 있어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징수(안 제3조)

나. 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(안 제4조)

다. 사용료 징수기준은 내무부의 기준에 의함.

3. 참고자료

경상남도 통전 12410-389('94.11.29)호에 의거 경상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(안)

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"전자계산조직"(이하 "컴퓨터"라 한다)이라 함은 입력.제어.기억.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,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.
- 2."관련기기"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출력장치, 보조기억장치, 단말장치와 보조기기를 말한다.

제3조(징수기준)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"별표"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.

제4조(징수방법) 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료 감면)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과급효과가 큰 개발업무
2.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
3.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기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
4.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사 용 료 징 수 기 준

구	분	산 정 기 준
기계사용료	렌탈·리스	$\text{월당금액} \times 5 \div 12 \times \text{CPU시간} \div \text{월평균CPU사용시간}$
	구 매	
인건비(SA·PG·OP)		$\text{구매가격} \div 5 \div 12 \times \text{CPU시간} \div \text{월평균CPU사용시간}$
전산자료입력료 (1 STROKE 당)		기능직 10등급 5호 월평균 보수 $\div 30 \div$ 80,000 STROKES
소 모 품 비		실 비
제 잡 비		위 전체금액의 10%
여비 · 기타		실 비
<p>주 : 월평균CPU사용시간 = 전산기보유시군의 전년도 월평균CPU시간의 평균 (평균시간은 내무부에서 책정시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월평균보수 = 봉급 + 장기근속수당 + 전산수당 + 기말수당 월평균액 + 정근수당 월평균액 + 직무수당 · 인건비 및 전산입력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직 6급 10호 (근속년수 10년 기준) - 기능직 10등급 5호 (근속년수 5년 기준) · 기계사용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렌탈(또는 리스)계약만료후 소유권이전 사용시 구매가격은 "최초 계약 당시 구입기준 가격"으로 함. 		